

제 호		
토지출입증		
사진 (2.5cm × 3cm)	① 소 속	
	② 성 명	
	③ 생년월일	
위 사람은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(시·도지사) 인		

(뒤쪽)

④출입목적	
⑤출입지역	
⑥유효기간	년 월 일 부터
	년 월 일 까지
유의사항 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 2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직무를 행할 때에는 이 증을 내보여야 합니다. 3.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	